

보도자료

2010년 3월 8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 (☎750-2730)
인터넷정책과 안원호 사무관 (☎750-2735) awh19@kcc.go.kr**온라인광고 피해 구제절차 본격가동 시작****-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개최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식으로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회장 홍원익)는 2010년 3월 8일(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 30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분쟁에 대한 신청사건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화해·알선·조정 등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광고모델의 출현으로 온라인광고 관련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외적인 피해구제절차로 도입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소송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범운영 기간부터 조정위원을 맡았던 이상석 변호사(법무법인 으뜸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소재선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란주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김달진 전문위원(한국방송광고공사) 등 30명이 조정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02-2144-4424), 팩스(02-2144-4420), 전자우편(dispute@kiado.kr), 홈페이지(<http://adr.kiado.kr>) 및 방문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신청 문의

1. 주 소 : (138-9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2. 전화/팩스 : 02-2144-4424 / 02-2144-4420
3. 전자우편 : dispute@kiado.kr



[붙임 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순 서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이 메 일
위 원 장	이 상 석	법무법인 으뜸 / 대표변호사	e-234@hanmail.net
부위원장	소 재 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sojs@khu.ac.kr
부위원장	곽 란 주	법무법인 산지 / 변호사	krj0010@hanmail.net
부위원장	김 달 진	한국방송광고공사 / 전문위원	e-paper@kobaco.co.kr
위 원	곽 혁	한국광고주협회 / 관리부장	kaapr@kaa.or.kr
위 원	공 기 중	NHN Business Platform / SA센터장	kijoong.kong@nhn.com
위 원	권 헌 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교수	khy@kw.ac.kr
위 원	김 민 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mkim0376@hanmail.net
위 원	김 진 백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 사무국장	adkjb@mountview.co.kr
위 원	김 학 웅	법무법인 창조 / 변호사	ragnarok21@empal.com
위 원	김 형 근	(주)HS애드 / 국장	hkkim@lgad.co.kr
위 원	류 광 현	법무법인 태평양 / 변호사	kh.ryoo@bkl.co.kr
위 원	박 태 원	신성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chelsea91@lycos.co.kr
위 원	박 형 석	법률사무소 경세 / 변호사	phslaw@chol.com
위 원	박 환 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onepark@khu.ac.kr
위 원	성 종 규	법률사무소 오름 / 변호사	jksung123@naver.com
위 원	오 병 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windoh@yonsei.ac.kr
위 원	오 창 호	한신대학교 경영학부 / 교수	compino@hs.ac.kr
위 원	이 기 준	SK마케팅앤컴퍼니 / 팀장	juny@skmnc.com
위 원	이 동 재	(주)엔툼애드 / 대표이사	jaylee@ntom.co.kr
위 원	이 동 학	법무법인 서린 / 변호사	ldh8841@hanmail.net
위 원	이 병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leebgb@hufs.ac.kr
위 원	이 윤 식	김·장법률사무소 / 변호사	yunsik.lee@kimchang.com
위 원	이 정 민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 회장	next.marshmallow@gmail.com
위 원	장 진 영	서일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coolcgy@gmail.com
위 원	정 진 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교수	chung2168@dankook.ac.kr
위 원	최 승 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csw@ewha.ac.kr
위 원	하 행 봉	한국광고업협회 / 상무	hbha1234@hanmail.net
위 원	한 명 옥	법무법인 동서남북 / 변호사	lawkey4u@hanmail.net
위 원	황 창 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교수	wolgam@empal.com

[붙임 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소개

o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목적 및 성격

온라인광고분쟁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와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절한 피해구제절차로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분쟁에 대한 신청사건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하나로서, 민간 자율로 운영되지만, 위원회 성격상 공익성이 강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관 협력’ 형태로 조직되었습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분쟁당사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온라인광고산업 신뢰향상 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란?

비사법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라고도 불리며,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화해·알선·조정 등 당사자간의 합의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입니다. 엄격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른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법리적 해결 외에 사회통념에 따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비법조인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 조정에 해당

o 조정위원

- 조정위원회의 구성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온라인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0인 이내(위원장 1인)로 구성되며 법조계, 학계, 업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합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5인 이내로 조정부를 구성(운영규정 제21조)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o 조정절차

- 조정대상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광고주 및 광고 대행사, 미디어랩사, 매체사뿐만 아니라 제3자가 신청한 온라인광고분쟁사건도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조정방법

조정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서면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서면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가 접수한 신청서 및 상대방의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이용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대면조정절차가 있습니다. 대면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조정절차도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절차도]



o 조정효력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고(운영규정 제30조), 당사자들에게 조정결정서와 수락서를 함께 발송하여 수락여부를 묻습니다.

당사자들은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여부를 수락서와 함께 위원회에 알려야하며,

- ① 만약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이 성립됩니다.
- ② 그렇지 않고 수락의사를 정해진 기간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부의를사를 표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은 불성립되고, 당사자들은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한 피해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